

전주지방법원 2021. 4. 1 선고 2020가합2099 판결 [계약금 등 반환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훈태

피 고 1. 유한회사 B

2. 유한회사 C

3. 유한회사 D

변론 종결 2021. 3. 11.

판결 선고 2021. 4. 1.

주 문

1. 피고 유한회사 B은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유한회사 C, 유한회사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유한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유한회사 B이, 원고와 피고 유한회사 C, 유한회사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유한회사 C, 유한회사 D는 피고 유한회사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유한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8. 11. 14.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이 여주시 E 외 5필지 지상에 100kw급 태양광 발전시설 2개소에 대한 설비시공 및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 2019년6월 이내에 위 태양광 발전시설 2개소를 완공한 후 원고에게 이를 양도하고, 원고는 피고 B에게 각 태양광 발전시설 1개소 당 대금 3억 8,000만 원을 지급하되, 계약금3,000만 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중도금은 발전사업허가 완료시에 지급하며, 잔금은 '시공완료 사용 전 검사 후'에 위 태양광 발전시설 양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으면서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아울러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 B이 위 태양광 발전시설을 2019년 6월 이내에 완공하지 못할 경우 원고에게 매월 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도 함께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8. 11. 7.부터 2018. 11. 14.까지 사이에 피고 B에게 태양광 발전시설2개소 분 계약금 합계 6,000만 원(=3,000만 원 × 2개소)을 지급하였다.

3) 그런데 피고 B은 2019년 6월이 경과하도록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인허가 및 시공 업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고, 위 태양광 발전시설을 완공하지못할 경우 매월 지급하기로 한 250만 원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4) 이에 원고는 2019. 8. 5. 피고 B에게 '인허가, 시공의 지연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환불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환불요청서'(갑 제20호증)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2020. 2. 7. 피고 B에게 '피고 B은 2020. 3. 30.까지 부지대체 방안을 마련하여 이전하기로 하고 만약 불이행시에는 2020. 3. 31.까지 환불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해지 요청서'(갑 제21호증)를 재차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5, 갑 제18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자신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적어도 원고의 2020. 2. 7.자 계약해지 요청서에서 정한 2020. 3. 30.이 경과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상당액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7.자 계약해지 요청서에서 정한 위 돈의 반환일자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20.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유한회사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유한회사 C, 유한회사 D(이하 '피고 C', '피고 D'라고만 한다)는 피고 B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이므로, 피고 C, D 역시 피고 B과 연대하여 이 사건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나. 판단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이는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고,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해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어느 회사가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회사 가운데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를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이용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여기에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을 이용하였는지는 기존회사의 폐업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자산이 이전된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다27164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B와 피고 D가 피고 C의 본점과 같은 건물, 같은 층에도 사무실을 두고 있는 사실, 피고 C의 대표이사는 'F'이고, 피고 B의 대표이사는 'G'이었다가 2020. 10. 19. 'F'으로 변경된 사실, 피고들은 모두 태양광 발전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사실, 피고들 직원들이 다른 수분양자인 H와 대화하면서 피고들이 사실상 동일한 회사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피고 B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의석, 판사 김진아, 판사 정주현